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상고방침(2014누71308)

-
- 1,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2과-4356(2015.6.3)호와 관련입니다.
 2. 2심에서 우리구가 패소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상고제기 지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 (1) 사건번호 : 2014누71308
- (2) 사 건 명 :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3) 당 사 자 : 원고(피상고인) - 한*****
피고(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4) 소 가 : :7,135,720원

나. 원고(피상고인) 청구취지

(1). 피고가(상고인) 2013년 7월 과 2013년 9월에 한 재산세(도시지역분포 함)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총 281,293,390중 정당세액 총 259,886,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상고인)가 부담한다.

다. 청구이유

(1). 피고(상고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폐지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산세를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위 조례를 법제화하면서 그 감면 비율이 100분의 75로 축소되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라 규정한 것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

연한 법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는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여 위 감면 조항을 배제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2013. 6. 1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인 10.37%에 감면비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주장하며 부과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1심(서울행정법원) 판결내용

(1) 피고가 2013년 7월 과 2013년 9월에 한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총 281,293,390중 정당세액 총 259,886,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바.상고사유

(1)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가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44조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2) 원고의 사건과 거의 동일한 피고와 한국도시가스 간의 소송(2014구합54103호, 2014구합 60047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대하여 이 사건 원심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한 사실이 있음

(3)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고 앞으로도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정의를 받아 과세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사. 소송수행자 : 세무1과 지방세무 주 사 성기환
지방세무주사보 최지현

- 붙임: 1. 판결문(2014누71308). 1부.
2. 검찰청 상고지휘 공문. 1부.
3. 상고장(안). 1부. 끝.

주무관 **최지현** 법인1팀장 **성기환** 세무1과장 **신오식** 기획경제국장 06/04
문경수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 代서혁수
장

시행 세무1과-11242 () 접수 ()
우 135-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73 / 전송 02-3423-8893 / cjh9024@gangnam.go.kr / 부분공개